

내용증명

## 발신인

상호（사업체명） : BBB회사 사업주명:최대표

주소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（판교동, 판교원마을3단지 아파트）

전화번호 : 02-111-111

## 수신인

법인명 : CCC주식회사 대표이사:김대표

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632 （무릉리） 전화번호 : 02-000-000

**제목 : 용역대금 반환 등 청구**

# 귀사（수신인, 이하 ’귀사’：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1. 본 발신인은 2023.01.01 경 귀사에게 동영상편집（이하 ‘본 건 용역 이행 내용’）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（이하 ‘본 건 용역 계약’）을 체결하였습니다.
2. 이에 본 발신인은 본 건 용역계약에 따라，귀사에게 용역대금 1,000,000원을 2023.12.05 지급하였습니다.
3. 그런데 귀사가 본 발신인에게 제공한 본 건 용역 이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내

용과 방식 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-즉，귀사는 동영상편집에서 일부만을 작업함

1. 따라서 귀사는 발신인에게 본 건 용역계약과 민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, 발신인이 귀사에게 위와 같이

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（예금주 : BBB회사, 은행명 : 현재 은행, 계좌번호 : 000-111- 000）

1. 만일 귀사는 본 발신인이 본 건 용역계약에 따라 귀사에게 이미 지급한 위 용역대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사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 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

이 경우, 귀사는 본 건 용역계약에 따른 본 발신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, 소송비용

까지 귀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.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%가 될 것 입 니다.

1. 뿐만 아니라,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사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, 본 발신인은 귀사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.

- 동영상완성본을 받지 못하여, 정해진 방송일에 송출을 진행하지 못함, 그리하여 미방송 손해 발생

8. 본 발신인이 귀사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사는 기한 내에 귀사의 명백한 용역대금 반환의

변 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

2024**년 이월** 02**일**

**위 발신인** BBB 회사 최대표 （인）